

2026년 3월말 기준 사 업 보 고 서

2026년 01월 01일 부터
2026년 03월 31일 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게시)합니다.

2026년 03월

화성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종욱

목 차

I. 주요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 가. 총회(대의원회)
 - 나. 이사회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3. 정관변경 사항

II. 주요사업추진현황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유통)사업
3. 신용(금융)사업
4. 기타사업

III. 주요사업추진실적

IV. 재무현황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I. 주 요 현 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년월일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2026년 01월 30일	53 명	1. 제62기 결산보고서 승인 및 배당금지급방법(안) 결정 2. 정관의 변경 3. 조합원인 이사선거

나. 이사회

개최년월일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2026.01.22	7	1. 조합원 가입·승낙 및 탈퇴·지분 환급 2. 청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지급보증한도 승인 3. 2026년 환원사업 품목 결정 4. 동일인당 대출한도 결정 5. 차입금 최고한도 승인 6. 2026년 이용고배당 사업별 배점기준 설정 7. 구매사업 무이자 외상기일 설정 8. 결원된 선거관리위원 위촉 9. 대의원총회 부의안건 심의
2026.02.20	6	1. 조합원 가입·승낙 및 탈퇴·지분 환급 2. 이사순서 지정 3. 인사위원회 구성 4. 경제사업 여신심사위원회 구성 5.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6. 매취판매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7. 2026년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수립 8. 전무임기제 평가 실시 9. 정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제정
2026.03.25	6	1. 조합원 가입·승낙 및 탈퇴·지분 환급 2. 고정자산 취득 3. 대출심사위원회 구성 4. 중앙회 출자 5. 자금세탁방지 업무매뉴얼 일부 개정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가. 사무소 현황

사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고
화성농협	33310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구숫골길 84 (구재리)	041-942-4681	본점
화성농협 비봉지점	33316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록평용당로 775-1 (록평리)	041-942-5681	지점

나.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분기	당분기	증감내역	비 고
임원	조	합 장	1	1	0	
	(비 상 임)	감 사	2	2	0	
	상	임 감 사	0	0	0	
	(비 상 임)	이 사	6	6	0	
	상	임 이 사	0	0	0	
	사	외 이 사	0	0	0	
	소 계 (A)		9	9	0	
정규직	M	급	2	2	0	
	3	급	4	4	0	
	4	급	5	5	0	
	5	급	11	11	0	
	6	급	4	4	0	
	7	급	0	0	0	
	기	능 직	8	8	0	
	생	산 업 무 직	0	0	0	
	업	무 직	0	0	0	
	소 계 (B)		34	34	0	
비정규직	계	약 직	0	0	0	
	기	간 제 근 로 자	22	19	-3	
	시	간 제 업 무 보 조 원	0	0	0	
	파	트 타 이 머	0	0	0	
	촉	탁	0	0	0	
	소 계 (C)		22	19	-3	
총 계 (B + C)			56	53	-3	
총 합 계 (A + B + C)			65	62	-3	

3. 정관변경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이사회 (§ 48)	⑥ 조합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⑦ 조합장이 제6항에 따라 소집이 요구된 이사회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1.11.> ⑨ 이사회는 제49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09.11.11.>	⑥ 조합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 감사 또는 상임이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조합장이 제6항에 따라 소집이 요구된 이사회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 상임이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⑨ 이사회는 제49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 한다.	
이사회 의결사항 (§ 49)	<제1레>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2. 법정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3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사항외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7. 1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9.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조합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1.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2.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레>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2. 법정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3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사항외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7. 1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9.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조합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1.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2. 상임이사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 13.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4. 기타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원의 정 수 (§ 51)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제1레>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상임으로 한다): 1명 2. 조합원인 이사: 6명 3. 감사: 2명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제1레>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비상임으로 한다): 1명 2. 상임이사: 1명 3. 조합원인 이사: 6명 4. 조합원이 아닌 이사: 1명 5. 감사: 2명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임원의 직무 (§ 52)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제1례>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① <개정 2009.11.11., 2017.12.26.> ※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례 또는 제2례 중에서 선택함. 그 외의 경우에는 제1례를 선택함 <제1례>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한다.	
임원의 선출 (§ 54)	② 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다음 각호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인사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으로 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11.11., 2015.6.17.> 1. 조합장 1명 2. 이사회가 정하는 비상임이사 3명 3. 조합장이 정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1명 4. 이사회가 정하는 대의원 2명	
임원의 임기 (§ 55)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 2년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 2년	
직원의 임면 (§ 60)	<제1례> 조합장이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①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1명과 상무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제2례>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개정 2009.11.11.> ① 조합의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3명 이내의 상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상임이사가 제청한 자에 대하여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간부직원의 직무 (§ 61)	<제1레> 조합장이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09.11.11.> 전무는 조합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며, 상무는 전무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 하고, 전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장이 정하는 상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레>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개정 2009.11.11.> 상무는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부칙		부 칙(2026.01.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적용하되, 상임이사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선출할 수 있다.	

II.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 ☐ 2025년 농협사업에 대한 운영의 공개 실시
 - 일자 : 2026.02.10.~02.13(3일간)
 - 주요 내용 : 식전행사 및 주요사업 보고
- ☐ 2026년 농작업지원단 운영
 - 사업기간 : 2026년 2월24일 ~ 2026년 12월31일
 - 사업비 : 120,000(천원)
 - 인력운영 작업비 지원 (농가지원)
 - 교통비 : 5,000원 간식비 : 5,000원

2. 경제(유통)사업

1. 행사명 : 『하나로마트 고객감사 정육 주말특가 할인행사』
행사기간 : 25. 03. 13(금) ~ 03.15(일) 3일간
2. 2026년 칠갑마루 브랜드쌀(향진주)계약재배 사업
 - 1) 약정서작성 기간 및 장소
기간 : 2026년 2월 20일 ~ 2026년 2월 27일
장소 : 화성농협본점사무실, 비봉지점 주유소
 - 2) 준비서류
 - 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서류
 - 3) 장려금 지원대상 및 금액
 - (1) 지원금액
 - 향진주 : 조곡1포/40kg당 5,000원 (군3천원, 농협2천원) 40ha 한도 (전년 15ha)
 - (2) 향진주 신청요건
 - 칠갑마루 청양 향진주쌀 생산, 유통 주체인 화성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출하를 이행한 농가
 - 해당 필지 GAP 인증을 받은 농가

3. 신용(금융)사업

- ☐ 2026년도 농업경영자금 본지점 배정

1)배정기준 및 배정금액

가.배정기준

- 사무소별최근3개년(1~3월)가중평균대출금액
(2023년:20%,2024년:30%,2025년50%)
- 지역별여건감안한배정금액조정반영

나.배정금액:861백만원

2)본지점별 배정금액

가.화성본점:444백만원

나.비봉지점:417백만원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26년3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전년도말 (E)	전년도말 대비	
						증감	성장률		증감	성장률
경제사업		33,745	8,481	25.13	6,684	1,797	26.89	29,934	-21,453	-71.67
판매		14,789	4,346	29.39	3,209	1,137	35.44	13,832	-9,485	-68.58
구매		7,549	1,309	17.34	1,341	-32	-2.41	5,380	-4,071	-75.67
마트		10,482	2,636	25.15	1,965	671	34.16	10,009	-7,373	-73.66
가공		0	0	0.00	0	0	0.00	0	0	0.00
기타		925	190	20.51	169	21	12.53	714	-524	-73.40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	125,367	105,629	84.26	102,326	3,303	3.23	111,997	-6,368	-5.69
	평잔	116,379	107,660	92.51	104,627	3,032	2.90	104,043	3,617	3.48
상호금융 대출금	잔액	77,769	71,711	92.21	68,832	2,878	4.18	67,141	4,569	6.81
	평잔	74,880	69,658	93.03	68,906	752	1.09	68,061	1,597	2.35
보험료		4,835	924	19.11	983	-59	-5.98	4,633	-3,709	-80.05

※ 경제사업 기타실적은 생물자산, 창고, 이용, 운송 매출액 및 수수료 실적 등의 합계임

IV.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유동자산	7,286	I. 유동부채	15,102
1. 현 금	591	1. 외상매입금	287
2. 외상매출금	623	2. 단기차입금	12,117
3. 재고, 생물자산	4,627	3. 기타유동부채	2,699
4. 기타 유동자산	1,445	II. 금융업예수금	105,629
II. 금융업예치금	44,770	III. 금융업차입금	7,208
III. 금융업대출채권	74,651	IV. 보험(공제), 농작물 보험부채	
IV. 보험(공제), 농작물 보험자산		V. 비유동부채	8,463
V. 비유동자산	24,635	1. 장기차입금	8,213
1. 투자자산	5,659	2. 기타비유동부채	251
2. 유형자산	18,969	부채 합계	136,402
3. 무형자산		I. 출자금	9,486
4. 기타비유동자산	7	II. 자본잉여금	
		III. 자본조정	-47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
		V. 이익잉여금	5,503
		자본합계	14,939
자산총계	151,342	부채와 자본총계	151,342

※ 금융업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계수임

※ 백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5년 3월말 (A)	'26년 3월말 (B)	증감 (B-A)
영업수익	6,508	8,269	1,762
영업비용	4,938	6,303	1,365
매출총이익	1,570	1,967	396
신용사업	657	789	131
경제사업	913	1,178	265
판매비와 관리비	1,428	1,670	242
영업손익	142	297	155
교육지원사업준비	132	130	-3
영업외손익	280	294	14
법인세차감전손익	290	461	171
법인세비용	-18	-20	-2
당기순손익	307	480	173

※ 백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